

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 청 북 도 의 회

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**발 의 자** : 이상식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22년 3월 2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3월 3일

3. 제안이유

O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O 가축분뇨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O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 명시(안 제5조)
- O 시·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O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(안 제8조)
- O 자원순환 활성화 미 실천자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(안 제9조)
- O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축산농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의 포상 규정 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배경

-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충북의 산업 및 사회구조의 대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농축산분야 역시 예외일 순 없으며, 축산 분야, 특히 가축분뇨처리가 농업부분에서 탄소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에 기존의 관행적 축산분뇨 처리방식에서 벗어난 **탄소배출 저감을 위한**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
- 국내 및 충북 축산업의 현주소는 소득수준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인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의 사육두수가 증가하였고, 이에 가축 분뇨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

☑ 도내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 현황('21년)

- □ '21년 12월 축산분뇨 발생량은 1일 8,962톤, 연간 3,271천톤임
-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육우 38.3%, 돼지 35.4%, 닭·오리 16.7%, 젖소 8.3%, 기타 (개, 염소, 사슴 등) 1.3%로 나타남

축 종	사육두수	1일 배출량	발 생 량		
千 ᅙ	('21년 12월)	(환경부고시)	1일	년 간	비율
<u></u> 계	13,522,216	-	8,962톤	3,271천톤	100%
한육우	250,745	13.7	3,435톤	1,254천톤	38.3%
젖 소	19,593	37.7	739톤	270천톤	8.3%
돼 지	622,610	5.1	3,175톤	1,158천톤	35.4%
닭.오리	12,489,184	0.1	1,499톤	547천톤	16.7%
기타(개,염소,사슴 등)	140,084	개 1.1, 사슴·염소 0.7	114톤	42천톤	1.3%

※ 축종별 1일 분뇨 발생량 : 환경부 고시기준

□ 지난해 발생한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화 88.3%, 정화방류 11.7%로 나타남

○ 자원화 처리된 2,888천톤 중 공동자원화 4.6%(150.5천톤), 퇴비화 70.8%(2,315.9천톤), 액비화 12.9%(421.9천톤)로 처리 되었음

· 가축분뇨	자 원 화(88.3%)			정화방류(11.7%)	
발 생 량	공동 자원화	퇴비화	액비화	공공 처리	개별방류
 3,271천 톤	150.5	2,315.9	421.9	153.7	228.9
(100%)	(4.6%)	(70.8)	(12.9%)	(4.7%)	(7.0%)

- 이러한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 되어 토양에 환원시 키고 있으며, 충북의 경우 '19년 69.4%에서 '21년 88.3%로 자원화율을 향상 시키는 노력이 있었지만,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악화 및 축산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**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방향전환 및**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
 - 최근 3년간 가축분뇨처리(자원화율): ('19년) 69.4% → ('20년) 88.3% → ('21년) 88.3%
- 따라서 축산분뇨 자원화 비율의 상향 및 자원화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, 이에 **축산업의 탄소중립의 실현과 지 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**임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에 따라 "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" 및 "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"에 대한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수 있어 축산분뇨를 이용한 자원 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○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항에서 "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였고,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본 조례의 주요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,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

O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	2013.10.01
강 원 도	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	2021.03.12
충청남도	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04.01
전 라 북 도	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	2021.10.01
전 라 남 도	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	2013.05.20
경 상 북 도	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	2021.01.04
경 상 남 도	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	2019.12.26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"가축", "가축분뇨", "자원순환", "자원화조직체"에 대하여 정의함
 - 본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·액비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생산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4호의 자원화조직체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단체·법인이 포함되어 있음
- 안 제3조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및 축산 농가, 자원화조직체의 책무를 부여하였음
- 안 제4조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-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 연도별·지역별 가축사육 현황과 전망을 통해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·수집·운반·처리를 계획하고,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, 이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

○ 안 제5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들을 명시함

- △자원순환 기술의 개발·보급 및 교육 훈련 사업 △고품질 퇴비·액비의 생산지원 사업 △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△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△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△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원활한 자원순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
- 특히,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·보급을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화

방식을 확대 및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,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 에 너지화를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였음

- 안 제7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운영, 퇴비·액비 유통센터 운영, 가축분뇨 자원에 너지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군별 자원순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O 안 제8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임
- 이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,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화조직체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안 제9조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을 마련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축산분야 탄소배출 감축이 요구 되고 있으며, 매년 증가하는 가축분뇨 발생량에 따른 처리 부담 가중과 공동 자원화시설의 운영 악화 및 축산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등 따라 기존의 관행적 축산분뇨처리에서 벗어나 **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방향전환**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
- 특히,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과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지 증가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화된 퇴·액비를 소비할수요처가 줄어들고, 농경지 양분과잉 문제 등 축산분뇨 자원화 여건이변화되고 있어 축산분뇨의 퇴·액비로의 활용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화까지 확대하는 등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- 본 조례는 **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** 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 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- 축산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원화비율의 상향 및 자원화 다변화를 통해 **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 축산업이 야기시키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**, 기존의 자원화조직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경영 안정 도모 등을 통해 축산분뇨를 이용한 **자원순환 여건을 개선하는데**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- O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